

2019년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19.(금요일), 11: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434건(안건번호 제2019-19338호~2103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중 363건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3,06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특히 삭제된 뮤지컬 반주음악 음원파일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9338호)은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한 게시물 3개 안건(제2019-19339호~19341호) 및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사진 게시물 1개 안건(제2019-21034호)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기로 의결함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명령 청구 계정 1건(안건번호 제2019-3176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 1개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임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19338호~2103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434건임

(보호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9338호는 일반인이 익명으로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구성곡 중 하나인 'Do you here the people sing'의 반주음악 음원파일을 올린 사안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9338호 뮤지컬 반주음악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뮤지컬 곡 음원의 합법시장 판매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참고 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곡은 음원 제공 사이트에서 7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반주음악과 동일한 음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원본 확인을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물은 심의시점 현재 삭제되어 있음
- B 위원 : 해당 곡 저작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연주자 등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을 침해하여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나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 조치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복제·전송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를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좋겠음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9338호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점 현재 이미 삭제되어 있으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9339호~19341호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 2019-19339호~19341호는 일반인이 익명으로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영화 포스터, 스틸 컷 또는 인물 사진 등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사안임
- A 위원 : 게시물은 3개이나 해당 저작물은 5개인 것으로 보임
위 저작물들의 시장에서 판매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포털 사이트의 해당 저작물 정보를 보여주면서)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스틸 컷(1장),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스틸 컷(1장)은 해당 영화의 관리자가 위 스틸 컷을 무료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영화 '제제한 로맨스' 영화 포스터(1장),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 스틸 컷(1장)은 포털 사이트 영화 정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배우 '알 파치노'의 인물 사진(1장)은 해외 갤러리에서 판매 중임
- B 위원 : 배우 사진이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외 갤러리 담당자로부터 회신 받은 이메일을 제시하면서)작품 규격에 따라 \$3,000~\$13,500임

- B 위원 : 해당 사진을 이용한 게시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 또는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의문임
 게시글 전문 내용을 보면 대본을 잘 보라는 의미로 눈을 강조하는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사진 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상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작성자가 글을 창작하면서 유명 배우의 특징적인 부분을 효과적·변형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할 경우 글쓴이의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결 의견임

- B 위원 : 나아가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부결 의견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9339호~19341호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 또는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시정권고를 할 경우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21034호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사진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민신문고 민원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21034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현재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홈페이지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A 위원 : 제품판매 게시물 내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B 위원 : 해당 게시물의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저작물성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침해자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권리주장자가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부결 의견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1034호는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고,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므로 만장일치로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19342호~21033호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B 위원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시정조치 권고 가결 의견에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13168호~14862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362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9339호~19341호 및 제2019-21034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건번호 제2019-19338호, 제2019-19342호~21033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363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 3,067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3176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 1개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전응준 분과위원장이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3.

분과위원장 전응준

위원 박성호